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Guideline on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

홍재현(Jae-Hyun Hong)**
정경희(Kyoung-Hee Joung)***
이호신(Ho-Sin Lee)****

〈 목 차 〉

I. 서론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보존을 위한 복제
II. 선행 연구	4. 도서관내 복제·전송
III. 도서관에서의 정보자원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도입 부분	5. 도서관간 복제·전송
1. 지침의 목적 및 의의	6.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 서비스
2. 용어의 정의	7. 보상금제도
IV. 도서관에서의 정보자원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본문 부분	8. 보상금 약정
1.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9.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
2.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V.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도서관 면책 규정, 복제, 전송, 저작권 보상, 저작권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pyright guideline on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 in order to produce and service work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The study examined researches on the library exemption regulation based on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and copyright remuneration. Also the study examined revised draft of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In the introduction part of this guideline the purpose of the guideline is clarified and terms used in the guideline is defined. In the body of this guideline the copyright guideline on library exemption regulation(the article 28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nd copyright remuneration related to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 is in detail suggested.

Key Words: Library Exemption Regulation, Reproduction, Transmission, Library Remuneration, Copyright Law

* 이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내용 중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hong@joongbu.ac.kr)(제1저자)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libinfo@cau.ac.kr)(공동저자)

**** 한국문화예술포럼원 예술정보관 사서(leehs@kcaf.or.kr)(공동저자)

• 접수일: 2005년 2월 21일 • 최초심사일: 2005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3월 7일

I. 서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은 종래의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서관들은 아날로그 환경과 달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과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라는 양측의 균형 및 조정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자 우리의 도서관 면책 규정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기술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2000년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0년 개정저작권법은 무제한의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외의 저작권 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따가운 비난과 호된 질책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서관 면책 규정은 2003년에 다시 한번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2003년 5월 27일에 개정 공포된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은 2000년 개정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면책 조건과 단서로 면책의 허용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내용을 많이 바꾸었다. 그로 인하여 조항 수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길이가 훨씬 길어졌다. 그 구조 또한 매우 복잡해졌다. 때문에 도서관 사서들이 집중해서 조문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않으면 그 면책 규정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현행 저작권법은 도서관간 원문의 전송(디지털 복제 포함) 및 출력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상금제도를 세계 조유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면책을 위한 보상금제도의 도입은 2000년 개정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 및 2001년 6월에 입법 예고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디지털 원문의 전송 및 출력에 대한 보상기준과 금액의 적용을 위한 시범실시 기간의 연장기간은 이미 2004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고, 보상금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서들은 실제로 도서관 현장에서 면책 규정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여 정보자원을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 또한 저작권 보상을 위하여 어떤 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때문에 크게 바뀐 도서관 면책 규정의 내용과 새로운 해법으로 갑작스럽게 제시된 보상금제도라는 법적 처방은 도서관에 심리적 불안 및 압박과 경제적, 행정적 부담감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들이 현행 저작권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복제(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복제 모두 포함) 및 전송에 의한 학술 정보의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저작권 지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

에 관한 저작권 지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폭넓은 지식을 갖춘다. 이어 본격적으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저작권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와 함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또한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른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보존을 위한 복제, 도서관내 복제·전송, 도서관간 복제·전송,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보상금제도, 보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약정,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동법시행령 시행령의 관련 조문 자체와 국내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및 문헌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방문 및 면담, 전화 상담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파악하였다. 셋째 저작권 관련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넷째, KERIS 협력도서관을 대상으로 본 지침(안)을 이 메일로 전송(2004년 8월 중순경)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다섯째, 저작권 전문가와 대학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2004년 7월 22일)를 개최하고 수렴한 의견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한편 본 연구논문의 투고를 마친 상태에서 「현행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개정안」이 2005년 3월 8일에 공청회에서 발표되었고, 저작권 관련 전문가와 일반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도서관측에서는 각기 다른 내용의 다양한 의견들을 개정안으로 개진하였다. 그러나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우리 도서관측의 개정 의견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면적 개정을 내세운 급진 개정법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2005년 개정저작권법이 우리의 의견을 수용할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쨌든 현시점은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뿐 아직 개정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는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인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와 동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지침 개발의 주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그렇지만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나타난 수정된 용어나 신설 조항에 대한 내용도 최종적으로 간략히 추가시켰다. 한편 본 연구는 현행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 지침의 방향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그 '원고'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저작권법과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의 충실한 문리해석에 보다 비중을 두고 지침의 내용을 전개하였음도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히는 바이다.

II. 선행 연구

우리의 현행 저작권법에 입각하여 도서관 실무자를 위하여 작성된 도서관에서의 정보자원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다만, KERIS가 2000년 개정저작권법을 기준으로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¹⁾를 회원기관 배포용으로 작성한 바 있다. 이 지침서의 구성은 저작권의 개요, 자료 확보에 관한 지침, 정보서비스에 따른 지침, 기타 저작권 관련 부분으로 대분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는 도서관 현장에서의 알아 두어야 할 저작권에 관한 기본 지식, 자료수집 및 서비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사항 및 해석들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2000년 개정저작권법과는 내용상에서 매우 큰 변경이 있고, 보상금제도 또한 새로이 도입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그대로 현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합하고 불가능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에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에 입각한 ‘도서관에서의 정보자원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지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관련된 저작권 세미나와 연구 논문의 선행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원선²⁾은 개정 저작권법 해설에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상에서의 도서관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정비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관내 열람을 위한 복제·전송,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보관된 도서관 복제·전송,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디지털 원문의 출력, 도서관간 열람 목적의 전송 및 디지털 도서 등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제도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용훈³⁾은 새롭게 개정된 2003년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보상금제도 도입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을 피력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이 취해야 할 자세 및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경수⁴⁾는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 2003 개정저작권법(상)에서 개정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 배경, 조사·연구를 위한 복제, 관내 전송 및 관외 전송, 면책 대상 복제 종류 및 보상금 지급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영아⁵⁾는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도서관 보상금제도 시행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 문화관광부 고시에 의한 도서관 보상금 기준 및 대상행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최경호⁶⁾는 디지털 복제·전송 및 디지털 원문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제도 도입에 따라 국립중앙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2) 임원선,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제63호(2003, 가을호), pp.2-4.

3) 이용훈,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방안,” 국회도서관보, 제40권, 제5호(2003, 7), pp.15-21.

4) 최경수,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 2003 개정 저작권법(상),” 제63호(2003, 가을호), pp.43-50.

5) 이영아,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2003, 12), pp.5-23.

도서관이 개발한 도서관보상금 시스템의 개요, 구성 및 기능, 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동현⁷⁾은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도서관 사이의 약정서(안)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복사업소 사이의 이행각서(안)의 내용을 소개·해설하였다.

이호신⁸⁾은 저작권법을 둘러싼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저작권 면책을 규율하는 제28조의 주요 내용과 보상금 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저작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재현⁹⁾은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먼저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의 국제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보상금제도, 권리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위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관한 공청회가 2005년 3월 8일 국회도서관에서 있었다. 이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 현행법의 제28조에서 제31조로 옮겨지고, 용어 수정 및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컴퓨터 등”이라고 수정하고 있다(개정안, 제31조 제2항 수정). 그 개념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제16호 신설).

둘째,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권리자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분배되지 않는 보상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공탁하도록 하여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방법에서 ‘공탁’을 삭제하고 “당해 저작재산 권자에게 지급”하는 단일 방법을 취하도록 변경하고 있다(개정안, 제31조 제5항 수정).

셋째, 저작권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보상금과 관련한 지정단체의 지정 및 취소 요건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있다¹⁰⁾ (개정안, 제31조 제6항 신설).

6) 최경호,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2003, 12), pp.25-56.

7) 김동현, “도서관 보상금 제도도입에 따른 약정서(안),”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2003, 12), pp.57-74.

8) 이호신,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9권, 제1호(2004, 봄), pp.43-64.

9) 홍재현,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4, 3), pp.93-119.

10) 개정안의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개정안, 제25조 제4항(신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넷째, 보상은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아 미분배보상금으로 공탁되는 경우가 많으며, 분배 보상이 10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수납된다 이를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것 보다는 미분배보상금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에 대한 공익 목적 사용규정을 신설하고 있다¹¹⁾ (개정안 제31조 제6항).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저작권법과 동시행령의 관련 규정,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 선행 연구의 내용들을 분석·검토하여 포괄적인 지식을 갖춘 후,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의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용한 저작권 지침을 명문화하였다.

Ⅲ. 도서관에서의 정보자원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도입 부분

1. 지침의 목적 및 의의

이 지침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도서 등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서비스하여 지식 정보의 창출을 촉진시키고 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사항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제 4항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 개정안 제25조 제5항(신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 개정안 제25조 제6항(신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2. 보상관계 업무규정에 위배된 때
 -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11) 개정안 제6항에 의하면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한 공익목적의 사용 규정 내용은 개정안 제25 조 제 6 항 및 제8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개정안 제25조 제7항(신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 개정안 제25조 제8항(신설):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위하여 이 지침의 기준으로는 2003년에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규정(제28조)과 저작권 보상을 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금년 3월 8일에 발표된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의 도서관 면책 규정(제31조)도 포함한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의 규정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그 범위는 신설된 조항과 수정된 용어 부분 등에 한한다

이 지침은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인지 및 준수해야 할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권고사항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2. 용어의 정의

가. 도서관 등

‘도서관 등’이란 2003년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교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도서 등

‘도서 등’이란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말한다.¹²⁾

다. 복제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의 14).

한편 개정안에 의하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¹³⁾·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안 제2조 22)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에서는 모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

12) 종래에는 자료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2000년 개정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의 본문에서 ‘도서 등’이라는 용어로 수정되었다.

13) 개정안에서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진촬영이라는 용어로 수정한 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 사진촬영 장치를 이용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사진 촬영하는 행위에도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미치게 됨을 명확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로 다시 제작하는 것 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디지털 복제를 확실하게 복제권에 수용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확대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컴퓨터 등의 기기를 사용하여 하드 디스크나 디스켓에 저장하거나, 서버에 저장하는 것, 스캐너를 이용해 인쇄 자료를 스캔 하는 것,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CD-ROM 등으로 제작하는 것에는 모두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미치게 된다.¹⁴⁾

라. 전송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9의 2). 여기에서 전송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법에 '일반 공중'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일반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석상의 혼란을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송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다.

'전송'이란 공중송신¹⁵⁾ 중 공중¹⁶⁾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말한다(개정안, 제2조 10)

전송권은 인터넷 등의 컴퓨터 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저작물의 전송으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설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상에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하는 행위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마. 판매용 도서 등

'판매용 도서 등'이란 정가, 회원가 가격은 출판사에 문의 등의 모든 대가 표시가 있는 도서 등을 의미한다. 발간된 복제물 중 일부만이 판매용으로 발행되고 그 나머지는 비매용으로 발행된 경우도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 가격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판매용으로 추정한다.¹⁷⁾

14) 홍재현,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p.342.

15) 공중송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안 제 2조 7).

16) 공중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법에서 공중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말하며, 특정다수인을 포함한다(개정안 제 2조 32).

17) 이영아, 전게자료, pp.21-22.

바. 비판매용 도서 등

‘비판매용 도서 등’이란 비매품으로 제작된 도서 등이나 매매 이외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도서 등을 말한다.

사. 이용허락

‘이용허락’이란 저작권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저작자나 기타 저작권자(이용허락자, licensor)와 저작물 사용자(피이용허락자, licensee) 사이의 적절한 계약(이용허락계약, licensing agreement)에서 합의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가 후자에 부여하는 허락을 의미한다. 이용허락은 양도와는 달리 저작권 소유의 이전을 가져오지 않는다. 즉, 이용허락은 오로지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로서, 부여된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이용허락 후에도 저작권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¹⁸⁾

아. 보상금제도

‘보상금제도’란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권리처리의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한 후에 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지침에서는 도서관 면책 규정에 적용되는 보상금 제도의 의미를 명확화 하기 위하여¹⁹⁾ 그 명칭을 ‘도서관의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전송 및 출력에 대한 보상금제도’²⁰⁾라 한다.

자. 저작권 사용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사용료)이다. 저작권 사용료는 보상금과는 달리 일정한 금액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

1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표준용어집(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 p.54.
19) 저작권법 제28조 제5항에서는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2003년에 관보에 고시된 [문화관광부 고시 2003-9호]에서 도서관 보상금 기준이란 명칭이 등장하면서 도서관 보상금제도라는 용어의 사용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보상금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바, 도서관 보상금 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명칭은 도서관에서의 자료 이용에 따른 보상금이라는 점에 걸맞으면서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0) 홍재현,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립 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19차 실무자 WORKSHOP 자료집(2004), p.62.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란 저작권법 제28 조의 면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저작물의 전송과 출력의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를 말한다.

카. 과금 시스템²¹⁾

‘과금 시스템이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도서관 등이 그 전송 및 출력의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계적인 장치를 말한다.

타. 과금 장치

‘과금 장치란 보상금을 이용자가 부담할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를 말한다.

Ⅳ. 도서관에서의 정보자원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본문 부분

1.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 1) 도서관 등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관된 아날로그 형태 도서 등의 일부분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동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2) 도서관 등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관된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일부분을 출력(프린트 아웃)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동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1항 본문).
- 3) 2)의 경우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²²⁾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²³⁾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비판매용 디지털

21)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2에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 이를 ‘과금 시스템’과 ‘과금 장치란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과금 시스템과 과금 장치는 의미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용어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어 그 정의를 여기에서 다루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앞으로 명확한 의미의 용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들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22) 개정안 제31조 제5항에서는 보상금 지급방법에서 공탁 방법을 제외시키고 지급하는 단일 방법을 취하도록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2)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쳐지게 될 것이다.

23)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학교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 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 7. 각종학교

형태의 도서 등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동조 제5항 단서).

- 4) 도서관 등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일부분을 출력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동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1항 본문).
- 5) 4)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²⁴⁾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을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비판매용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동조 제5항 단서).
- 6) 도서관 등이 조사·연구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자료 제공 시 아날로그 형태로 전부를 출력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²⁵⁾
- 7) 도서관 등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관된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일부분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 8)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이 적법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매(독)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조건 내에서 그 도서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 1) 도서관 등이 보관된 아날로그 형태의 도서 등을 자체 보존을 위하여 복제물(디지털 복제물 포함)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다(동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희귀본이나 귀중 도서, 대체본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서 손상, 훼손, 도난된 경우 등에 한한다. 정기간행물의 결호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보존용의 자료가 있음에도 열람을 위해 추가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의 대상이다²⁶⁾.
- 2) 도서관 등이 보관된 판매용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자체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이용허락의 대상이다(동조 제4항). 전자도서, 전자저널, CD-ROM, DVD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자체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만들 수 없다. 판매용의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인 경우에는 기존 포맷의 변경이나 다른 매체로의 변환하는 행위도 이용허락의 대상이다.²⁷⁾
- 3)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활용하여 자체 보존용의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는

24) 각주 22)의 내용과 동일함.

25)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도서이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는 도서 등의 복제를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의 전체를 1인 1부에 한하여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저작권법의 제108조(e)항을 참조할 것.

26) 許煥成, 2000新著作權法逐條概說 上(서울 : 저작권아카데미, 2000), p.310.

27)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보관된 도서 등을 자체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목적은 민간투자나 시장형성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전자출판 산업발전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 4) 도서관 등은 자체 보존을 위해 복제하는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구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동조 제6항).²⁸⁾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보존을 위한 복제

- 1) 도서관 등이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을 보존용의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물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동조 제1항 제3호).
- 2) 도서관 등이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을 보존용의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로 제공하는 것은 이용허락의 대상이다(동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1항 본문 단서).
- 3) 전송받는 도서관 등이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을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활용하여 보존용의 아날로그 형태 또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4. 도서관내 복제·전송

- 1) 도서관 등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동조 제2항).²⁹⁾
- 2)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료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단서).
- 3)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관내 열람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를 다른 포맷이나 다른 매체 등으로 디지털 복제하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동조 제4항).
- 4) 관내 열람을 위한 경우 도서관 건물 안에서는 무상의 전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동일한 건물일지라도 도서관 시설을 벗어난 학교 시설이나 교수 연구실, 사무실, 또는 분관 등으로의 전송은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다.³⁰⁾ 도서관 시설 이외의 도서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다

28)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동조 제6항의 규정이 제7항으로 옮겨져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변경은 일체 없다.

29)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이용과 관련하여 그 물리적인 장소의 범위를 도서관 내로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도서관의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연구활동과 교육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그 장소의 범위를 도서관 안에서도 제한하는 데서 벗어나 학교 안 또는 그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 등록된 이용자 등으로 조문을 유연하게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0) 최경수,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 2003 개정 저작권법(상),” 계간 저작권, 제 63호 (2003, 가을호), p.46.

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 5) 이 경우에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동조 제6항).³¹⁾
- 6)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이 적법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매(독)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조건 내에서 그 도서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7) 전자도서인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전자도서 출판사와 원·원 전략을 취하여 중복 노력을 피하고, 전자도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전자출판사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²⁾

5. 도서관간 복제·전송

- 1)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된다(동조 제3항).
- 2)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개정안 동조 제5항).³³⁾
- 3) 2)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의 전송 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동조 제5항 단서).
- 4) 도서관 등이 종이기반 형태의 비판매용의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기간의 제한없이 무상으로 즉시 전송할 수 있다.³⁴⁾
- 5) 도서관 등이 다른 도서관 안에서의 열람목적 이외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전송하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 6)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이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의 열람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 7) 전송받는 도서관 등이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비판매용, 판매용 모두 포함)을 다른 도서관 등에 전송하는 행위는 이용허락의 대상이다.

31) 각주 28)의 내용과 동일함.

32) 홍재현,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33권 제4호(2002, 12), p.69.

33) 각주 22)의 내용과 동일함.

34) 홍재현,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4, 9), p.104.

- 8)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정함에 따른다(동조 제5항 단서).
- 9) 이 경우에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가 추가됨)를 취해야 한다(동조 제6항).³⁵⁾
- 10) 도서관 등은 디지털화 이후에 디지털 복제물이 판매용으로 출시된 경우 디지털화된 도서 등을 계속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 등에 전송해서는 아니되고, 그 디지털 형태의 판매용 도서 등으로 대체 보유하여야 한다.³⁶⁾
- 11)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이 적법한 권리 처리가 이루어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구매(독)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조건 내에서 그 도서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6.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 1) 도서관 등이 상호협정에 따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사진 복제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우편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 이 경우 복제에 이용된 도서 등은 복제를 요구받는 도서관이 보관한 도서 등에 한한다.³⁷⁾

7. 보상금제도

가. 보상금 지급 대상 행위(동조 제5항)

35) 각주 28)의 내용과 동일함.

36) 홍재현, 전제논문, p.104.

37) 한편 현재 도서관에서 핫이슈인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의 저작권 면책 사항은 법률에 명확한 관련 규정이 조문화 되어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의 이와 관련한 판결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면책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문화관광부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여부에 대한 내린 해석(저작권과 -1800, 2004년)은 다음과 같다.

▶ Fax를 이용한 경우 : “Fax를 통한 서비스는 송신되는 문헌이 디지털 복제물이 아닌 아날로그 복제물이고, 또한 도서관간 복제물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동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요청하는 도서관 이 해당 문헌이 절판되어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 한정되어야 한다.”

▶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 “Ariel를 통한 서비스는 전송의 개념에 해당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면책은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 28조 제 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도서관간 복제물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의 단서는 이 경우 디지털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이상, 동조항의 적용도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1) 도서관 등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관된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의 일부분을 출력(프린트 아웃)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행위
- (2) 전송받는 도서관 등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의 일부분을 출력(프린트 아웃)하여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행위
- (3) 도서관 등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비매품이거나 발행된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전송하는 행위

나. 보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 (1) 도서관 등은 저작재산권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3 제1항).
- (2)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 관련 저작재산권자 단체로 지정받은 단체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다(2003년 10월 15일 지정).
- (3) 도서관 등은 보상금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지급한다.
- (4) 보상금 지급일은 도서관이 복제·전송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이다(동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 (5) 개별 도서관 등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계약에 따라 보상금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 (6) 도서관 등은 보상금 지급과 함께 복제·전송의 내역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제출한다(동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 (7) 복제·전송 내역에는 ISSN/ISBN, 단행본/정기간행물 구분, 단행본 서명/논문명 저자명 출판사, 발행연도, 유/무가지, 이용형태(현시/열람)/출력), 이용량 보상 금액수 등이 포함된다.³⁸⁾

다. 보상금 기준 및 보상 금액³⁹⁾

- (1) 보상금 기준 및 보상 금액은 문화관광부가 관보에 고시한 내용을 따른다. 해당 적용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기준이 관보에 고시되며, 그에 따라 보상금 기준 및 보상 금액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 (2) 현행 보상금 기준은 2004년 6월 8일 관보에 고시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29호]로서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⁴⁰⁾

38) 이영아, 전개자료, pp.14-15.

39) 관보.<<http://gwanbo.korea.go.kr>>

40) 현행 보상금 기준은 그 기간이 변경된 것 외에는 2003년 7월 26일 관보에 고시된 최초의 보상금 기준인[문화관광부 고시 제2003-9호]의 내용과 동일하다.

- (3) 출력의 경우 보상 금액은 판매용 단행본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1면당 5원, 비매용 단행본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1면 당 3원이다.
- (4) (3)의 경우 1면이란 이용 대상이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 (5) 전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의 경우 보상 금액은 판매용 단행본 도서와 판매용 정기간행물은 1파일 당 20원이다.
- (6) (5)의 경우 1파일이란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 (7) 비판매용 도서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라. 보상금의 지급 주체

- (1) 출력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출력이 이루어진 도서관 등이다(동조 제 5항).
- (2) 전송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전송을 행한 도서관 등이다(동조 제5항).
- (3) (2)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전송을 행한 도서관 등이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송을 행한 도서관 등과 전송을 받은 도서관 등과의 협의 및 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주체를 결정한다.

마.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

- (1)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업무이다.
- (2)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각각의 도서관 등으로부터 출력과 전송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한다.
- (3)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저작재산권자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분배시기 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은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개정안 동조 제6항).
- (4) 각 도서관 등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징수와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8. 보상금 약정

가. 보상금 약정 체결

- (1) 이용자가 보상금을 부담하고 대리지급자(복사업체 등)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도서관 등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제출한다.
대리지급자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그 각서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제출한다.
- (2) 이용자가 보상금을 부담하고 대리지급자(복사업체 등)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도서관 등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직접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한국

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제출한다.

- (3) 도서관 등이 보상을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도서관 등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직접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제출한다.

나. 약정 체결 시 주의사항

- (1) 보상의 공탁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약정서는 보상금 공탁의 주체를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도서관 등의 위임에 따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등은 약정의 체결 과정에서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항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위임하여 추후 보상금 공탁에 관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개별 도서관의 특수성 반영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약정서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부분에서는 상호 협의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때문에 개별 도서관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9.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가. 기술적인 보호 조치

도서관 등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도서 등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 (1)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한 디지털 복제, 관내 또는 도서관간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그 이용자가 저작권법 제28조(개정안 제31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의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도서 등의 디지털 복제 또는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장치 동시에 여러 부수를 출력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도서 등의 전체 출력을 방지하는 장치, 도서관 등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장치, 관내에서 전송되는 도서 등에 대한 동시 열람자수를 제한하는 장치 등을 포함한다.
- (2)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 (3)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4) 판매용으로 제작되는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나. 직원에 대한 저작권 교육

도서관 등은 사서 및 그 밖의 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불법적인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저작권 경고 표시의 부착

도서관 등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의 준수 및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컴퓨터나 복제기기 외관에 저작권에 관한 경고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라.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관된 도서 등을 디지털화 하여 자관 또는 다른 도서관 등에 전송하거나, 보관된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을 출력하는 도서관 등과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 도서 등을 자관의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도서관 등은 그 도서 등의 전송 및 출력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의 내용은 실제로 보상금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1) 보관된 도서 등을 전송하거나 자관의 이용자에게 출력하는 경우

- ① 보상금을 이용자 또는 도서관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관된 도서 등의 전송 및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금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② 보상금을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관된 도서 등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과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③ 보상금을 도서관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금 시스템 외에 이와 관련된 과금 장치의 설치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전송받은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

- ① 보상금을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전송받은 도서관 등은 저작물의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과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② 보상금을 도서관 등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서 등을 전송하는 도서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송 및 출력 내역이 확인된다면 이와 관련된 과금 장치의 설치 필요하지 아니하다.

V. 결 론

도서관 사서들은 학술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합되는 진보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저작권법과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에 입각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저작권법과 저작권 보상을 중심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은 기본 개념을 정리한 도입 부분과 본문 부분으로 대분하여 조직하였다. 먼저 이 지침의 도입부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함께 도서관 현장에서의 사서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관련 용어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들을 정의하였다.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첫째,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 둘째, 자체 보존을 위한 복제 셋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절판 등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보존을 위한 복제 넷째, 도서관내 복제·전송 다섯째, 도서관간 복제·전송 여섯째,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 일곱째, 보상금제도 여덟째, 보상금 약정 아홉째,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으로 대분하여 전개하였다. 각 항목에서는 사서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지침의 권고사항은 실제적으로 도서관 사서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조건 내에서 정보자원을 합법적으로 개발하고, 동시에 이용자에게 개선된 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침은 도서관 실무자들의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이 지침은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포함)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권고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 낸 최초의 지침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정보기술 환경의 발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정보이용자의 공정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도 전면적인 개정을 내세운 2005년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더라

도 그 후 점진적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개정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지침이 적극 활용되어 향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후속 지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안효질. “국내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새로운 과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저작권법 세미나 자료집 2004. pp.9-21.
- 우양태.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저작권법 세미나자료집. 2004. pp.43-63.
- 권세기. “공중전달권과 디지털도서관(저작권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입법정보, 제49호(2002), <http://www.nanet.go.kr/whatsnew/index.html?flag=lawinfo/list_lawinfo.html>
- 김동현. “도서관 보상금 제도도입에 따른 약정서(안).”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2003. pp.57-74.
-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제49호(2000, 봄호), pp.2-11.
- 신창환. 개정저작권법령 해설.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 2000. 8. pp.3-12.
- 吳承鍾·李海完. 著作權法. 제3판. 서울: 박영사. 2004.
- 오지철.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저작권 제도의 획기적 개선.” 계간 저작권, 제53호(2001, 봄호), pp.2-3.
- 이영아.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2003. pp.5-24.
- 이용훈.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대응방안” 국회도서관보, 제40권, 제5호(2003, 7), pp.15-21.
- 이호신.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9권, 제1호(2004), pp.43-64.
- 이호흥. “저작물 일부분 이용에 관한 적정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2004 저작권 세미나)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4. pp.7-31.
- 임원선.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제63호(2003, 가을호), pp.2-8.
-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5. 3.
- 정경희·이두영.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8권, 4호(2001, 12), pp.127-142
- 최경수. “2003 개정 저작권법 개요.” 국회도서관보, 제40권, 제5호(2003, 7), pp.2-9.
- _____.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2003년 개정 저작권법(상),” 계간 저작권, 제63호(2003, 가을호), pp.43-59.
- 최경호. “국립중앙도서관 과금시스템 도입 방안”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자료집. 2003. pp.25-56.
- 홍재현.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와 저작권 관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2004

- 저작권 세미나)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4. pp.33-49.
- _____.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 대응 전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2004 전국대학도서관대회 자료집. 2004. pp.195-223.
- _____. “대학도서관에서의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19차 실무자 WORKSHOP 자료집. 2004. pp.43-68.
- _____.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8권, 제1호(2004, 3), pp.93-119.
- _____.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과 저작권 관계.” 국회도서관학술정보교류협의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3. pp.41-66.
- _____.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2002, 9), pp.327-357.
- _____.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을 위한 저작권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 33권, 제 4호(2002, 12), pp.57-84.
- 관보. <<http://gwanbo.korea.go.kr>> [인용 2004. 8. 30]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인용 2004. 8. 30]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http://www.copycle.or.kr>> [인용 2004. 11. 1]
- 許燾成. 新著作權法 逐條解說·上. 서울 : 저작권아카데미, 2000.

к с і